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3.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16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17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4.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주민 편의성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된 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안 제32조)
-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
(안 제90조의2)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4조2항, 제27조제4항제9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6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2014.7.8.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과,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14.4.24 시행)되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1,000분의 10)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었으며
 - 안 제30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근거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조항을 정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인 교육·연구시설을 열거하였던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삭제(‘14.7.7)되어, 교육·연구시설을 직접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였으며,
 -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초과 상승분으로 확대 하였으며
 -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채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
- 이번 개정조례안 핵심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의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는 변상금의 감액·감면 조항이 아니며, 징수를 1년 동안만 연기해 주는 것으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1)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42 호 |
|----------|--------|

제출연월일 : 201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주민 편의성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4.7.8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2조)
- 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안 제90조의2)
- 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안 제4조제2항, 제27조제4항제9호, 제3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6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12.26~2015.1.15,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영등포구청장(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27조제4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0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100분의 10을”을 “100분

의 5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관리책임) ① <u>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u>영 제7조제2항</u>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p> <p>2. ~ 4. (생략)</p> <p>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 <p>제2조(관리책임)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조제3항--</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 <u>영</u> <u>제49조</u>----- ----- ----- ----- ----- -----.</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

| 현행 | 개정안 |
|---|--|
| <p>1. ~ 8. (생략)</p> <p>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⑤ (생략)</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p> |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3조제9항-----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p> <p>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u>100분의 10</u>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u>100분의 10</u>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략)</p>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 <p><u>류포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u></p> <p>2. <u>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u></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100분의 5</u> ----- <u>100분의 5</u>를----- -----.</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13조제6항----- ----- ----- -----.</p> <p>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p> |